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이용우·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8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정혜경·신장식·이용우

윤종오 · 황운하 · 김재원

전종덕・조 국・박홍배

박은정 · 서왕진 · 이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우리나라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한 조건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 제한에 합리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 사업에 준

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 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 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 및 특별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4조 및 제72조).
- 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7조).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

제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調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을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따른 조정의 신청"으로, "一般事業"을 "일반사업"으로, "10日, 公益事業"을 "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 "15日"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期間"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기간"으로, "當事者間의 合意로 一般事業"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으로, "10日, 公益事業"을 "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 "15日"을 "15일"로 한다.

제54조(조정기간)

제7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公 益事業의 勞動爭議의 調停"을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의 조정"으로, "勞動委員會에 特別 調停委員會"를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會는 特別調停委員 3人"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으로,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중에서 勞動組合과 使用者"를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로, "排除하고"를 "배제하고"로,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當事者가 合意로"를 "당사자가 합의로"로, "勞動委員會의 委員"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勞動委員會의 委員"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咨詢委員會의 委員"을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咨詢조를 합다.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爭議行爲가 公益事業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國民經濟를 해하거나 國民의 日常生活을 危殆롭게 할 위험이 現存하는 때에는 緊急調整의 決定"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조정의 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緊急調整의 決定"을 "긴급조정의 결정"으로,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을 "제1항"으로,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緊急調整을 決定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한"으로, "公表함과"를 "공표함과"로, "中央勞動委員會"를 "중

앙노동위원회"로, "當事者"를 "당사자"로 한다.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 1.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 2. 쟁의행위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것으로서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 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제7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當事者는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調整의 決定이 公表된"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으로, "즉시 爭議行爲"를 "즉시 쟁의행위"로, "하며, 公表日부터 30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爭議行爲를 再開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다만,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경우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이외 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한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8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 ① (현 ① (생략) 행과 같음)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 <삭 제> 정된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 는 勤勞者중 電力, 用水 및 주 로 防産物資를 생산하는 業務 에 종사하는 者는 爭議行爲를 할 수 없으며 주로 防産物資를 생산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 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 第54條(調停期間) ① 調停은 第53 | 제54조(조정기간) ① 조정은 제53 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 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 이 있은 날부터 一般事業에 있 -----일 반사업-----어서는 10日, 公益事業에 있어 -----10일, 공익사업 및 「방 서는 15日 이내에 종료하여야 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 요방위산업체-----15일-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 期間은 관계 當事者間의 合意 기간-----당사자간의 합의로 로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10日, <u>일반사업-----10</u>일, 공 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 이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第72條(特別調停委員會의 구성)
① 公益事業의 勞動爭議의 調 停을 위하여 勞動委員會에 特別調停委員會를 둔다.

- ② <u>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u> 調停委員會는 特別調停委員 3 人으로 구성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 調停委員은 그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중에서 勞動組合과 使用者가 순차적으로 排除하고 남은 4인 내지 6 인중에서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當事 者가 合意로 당해 勞動委員會의 의 委員이 아닌 者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者를 지명하다.
- 第76條(緊急調整의 決定)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u>爭議行爲가 公益</u> 事業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 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
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
위산업체의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
위원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
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
조정위원노동위원회의 공
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
동조합과 사용자
<u>배제하고</u>
<u>배제하고</u> <u>노동위원회의 위원장</u>
 <u>노동위원회의 위원장</u>
 <u>노동위원회의 위원장</u> <u>당사자가</u>
<u>노동위원회의 위원장</u> <u>당사자가</u> 합의로 <u>노동위원회의 위원</u>
<u>노동위원회의 위원장</u> <u>당사자가</u> 합의로 <u>노동위원회의 위원</u> <u>사람을</u>
<u>노동위원회의 위원장</u> <u></u>
<u>노동위원회의 위원장</u> <u>노동위원회의 위원장</u> 합의로 <u>노동위원회의 위원</u> <u>사람을</u>
<u>노동위원회의 위원장</u> <u>당사자가</u> 합의로 <u>노동위원회의 위원</u> <u>사람을</u> <u>사람을</u>
<u>노동위원회의 위원장</u> <u>당사자가</u> 합의로 <u>노동위원회의 위원</u> <u>사람을</u>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

-----15일-----

것으로서 현저히 國民經濟를 해하거나 國民의 日常生活을 危殆롭게 할 위험이 現存하는 때에는 緊急調整의 決定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u>緊急調整</u> 의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u>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u>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調整을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이유를 붙여 이를 公表함과

- 1.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 2. 쟁의행위가 「방위사업법」 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 업체에 관한 것으로서 방산물 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 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 오

동시에 中央勞動委員會와 관계 -----중앙노동위원회-----當事者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하다.

중지) 관계 當事者는 第76條第 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調整의 | 決定이 公表된 때에는 즉시 爭 議行爲를 중지하여야 하며, 公 表日부터 30日이 경과하지 아 니하면 爭議行爲를 再開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신 설>

第88條(罰則) 第41條第2項의 規定 | 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 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하다.

당사자-----

第77條(緊急調整時의 爭議行爲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① ----당사자는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조정 의 결정이 공표된-----즉시 쟁의행위-----한다. 다 만,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경우 전 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쟁의행 위를 중지한 관계 당사자는 긴 급조정 결정의 공표일부터 30 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삭 제>